

교무위원회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1998. 9.
개 정	2007. 9.
개 정	2012. 11.
개 정	2013. 1.
개 정	2017. 2.
개 정	2018. 10.
개 정	2020. 11.
개 정	2021. 09.
개 정	2022. 10.
개 정	2024. 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7조에 의한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무) ①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학사1부총장, 학사2부총장, 기획부총장보, 각처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16, 개정 2013.01.01, 개정 2017.02.28., 개정 2018.10.08., 개정 2020.11.11., 개정 2021.09.03., 개정 2022.10.13.)(개정 2024.04.01.)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보직교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5조 (의안발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

②위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안된 의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의결과) ①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즉시 내부결재로 기안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9.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교무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학사1부총장, 학사2부총장, 기획부총장보, 각 처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로 한다.